

구분		지원금액	비고
국 외	교원업적평가규정의 저명 또는 전국 규모 이상 학회	왕복항공료 실 소요액의 70%	단독 또는 책임저자(교신저자)에 한함
	언론 및 중앙(자치)단체		단독 또는 책임저자(교신저자)에 한함. 단,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함 - 100% 지원 : 중앙언론, 중앙정부 및 소속연구소 - 50% 지원 : 그 외

- 3) 신청방법 : 증빙자료를 첨부한 학술회의 참가 지원경비 신청서를 행사 참가 10일전까지 교학지원처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의 경우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- 4) 지급방법 : 국내 경우에는 신청 후 선 지급하고 국외의 경우에는 사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5) 지원제한
 - (1) 1인당 국내 참가는 연 4회, 국외 참가 연 1회까지만 지원한다.
 - (2) 국외 참가는 3등석 기준으로 항공료를 산출한다.
 - (3) 행사 주최 측 또는 여타의 기관(단체 등 포함)으로부터 참가경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다.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

- 1) 지원 자격 :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저명 또는 전국규모 이상 학회에서 정기 간행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본교 전임교원(강의전담교원 포함)이 단독 또는 책임저자(교신저자)인 경우에 한 한다.
- 2) 지원대상논문
 - 가) 신청년도에 발표된 학술논문
 - 나) 신청 직전년도에 발표하였으나 신청년도에 논문게재료가 청구된 학술논문
 - 다) 신청 직전년도에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였으나 신청년도에 발표된 학술논문
- 3) 지원내용
 - 가) 논문게재료(급행료, 우송료, 추가 별쇄본료 등의 부대비용 제외)
 - 나) 지원금액
 - (1) 편당 저명 국제학술지는 100만원 이내, 전국규모 이상 국내학술지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.
 - (2) 단독인 경우에는 100%, 책임저자(교신저자)인 경우에는 1/저자수*1.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.
- 4) 신청시기 : 수시
- 5) 제출서류
 - 가) 논문게재료 지원신청서(지정서식) 1부
 - 나) 논문게재료 청구서(또는 송금영수증) 1부
 - 다) 논문별쇄본 1부
 - 라) 해당 학회에서 발행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(교신저자) 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6) 지원제한

- 가) 교내외의 연구비를 수혜 받아 발표한 학술논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나) 1인당 저자 유형에 관계없이 연 3회까지만 지원한다.

라. 국내외 저서 발간 지원

- 1) 지원 자격: 이 대학교 전임교원(강의전담교원 포함)으로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저서의 저자
- 2) 지원 대상 : 학술저서, 교과서(중등 또는 대학에서 강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술한 교과서), 번역서, 창작집 (단행본으로 발간된 문예창작물로 단독저자의 경우)
- 3) 지원 금액

구분	지원금액	비고
학술저서	100만원 이내	단독 : 100% 공저 : 1/저자수*지원금
교과서, 번역서	50만원 이내	
창작집	50만원 이내	

- 4) 신청시기: 수시
- 5) 제출서류
 - 가) 학술저서(교과서, 번역서, 창작집)발간 지원신청서(지정서식) 1부. 다만, 학술저서의 경우 해당분야 학술단체의 전문가 3인의 학술저서임을 증명하는 추천서 첨부
 - 나) 저작물 1부
- 6) 지원제한
 - 가) 교내외의 연구비를 수혜 받아 발간한 저작물, 기존 저작물의 증보판은 제외한다.
 - 나) 저작물의 구분 없이 1인당 연2회까지만 지원한다.

마. 학술회의 또는 세미나 등 지원

- 1) 지원 대상 : 이 대학교의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, 학부/전공에서 주최·주관 또는 유치하는 학술회의 또는 세미나
- 2) 지원 선정 : 학술행사 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행사기본계획(자유서식)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하여 지원대상부서를 선정한다.
- 3) 지원 금액 : 학술회의의 성격, 중요성, 내용, 참석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
 - 가) 지역 행사 : 100만원 이내
 - 나) 중앙 행사 : 300만원 이내
- 4)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는 행사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5) 지원제한 : 행사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주관 부서에 대해서는 연 1회 지원한다.

바. 외국인 교원(강의전담교원 포함)의 국외 지원의 제한

- 1) 국외 학술회의(언론출연 포함) 참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.
- 2) 국외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: 외국저명학회 학술지에 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7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일까지의 사안은 소급적용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지침 개정 이전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금액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